

2019학년도 외부회계감사 권고사항

법인

1. 기부금

- 1) 향후 법인 기부금 수입은 목적이 있는 지정기부금만 가능하므로 기부금을 받을 때에는 약정서 등 증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없음

교비

1. 지출계정과목 정정

- 1) 교원보수로 지급된 시간강사 급여는 시간강의료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
- 목간전용을 통하여 계정과목 정정

2. 기금

- 1) 적립금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며, 적립금의 용도 변경 시 이사회 논의가 필요함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립금 목적 명시
- 2020학년도 적립금 사용분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해 이사회 논의 필요

3. 과거기간 당좌수표

- 1) 신한은행(구 조흥은행)의 2000년도 당좌수표 처리 필요
 - 은행 연락 후 분실신고 가능한지 문의
 - 법원에 제권판결 신청하여 수표 없애는 절차 필요

4. 재물조사(폐기된 자산 상계처리)

- 1) 폐기된 자산을 감가상각과 기자재 대장에서 처리하는 절차 필요
 - 시설팀을 통한 재물조사 후 관련 내용 처리



산단

1. 카페 운영

1) 계정과목 작성시 세목을 구분하여 구체적 기재 필요

현행	개선안
기타산학협력비	-기타산학협력비-상품매입비, 기타산학협력비-인건비 등 세목화 -적요 상세 기술

2) 수입, 지출발생 시 즉각적인 정산처리 필요

현행	개선안
월 1회	일 1회 혹은 주 1회

2. 외부연구 관리

1) 다문화 이주민 사회적 경제적 삶의 질 향상 프로젝트(전주동로타리클럽: 이
해경교수) 연구비 지출 증빙 자료 보완 필요

예산과목	문제점
회의비	회의록 누락
교재개발비	교재개발자와 강사 상이, 교재 증빙 누락
인건비	이력서 누락
사무용품비	예산과목과 증빙 내역 상이(사무용품비-식당영수증 증빙)
기념품비	배부 수령증 누락

2) 부가가치세 관리 철저

- 면세 대상 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는 부가세 징수 필요(과세, 전자세금
계산서)
- 면세 적용 연구 수주 시 ‘면세적용요청서’ 서식 제출(규정정비 시 서식
제정)
- ※ 면세 대상연구 : 신기술, 신이론 개발을 위한 연구

3) 간접비 징수 및 관리 철저

- 우리 대학 규정(연구비 관리 규정 제9조 2항) 10% 계상 필요
-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
- 지원기관의 지침내용 없이 간접비 계상이 되지 않은 연구 수주는 대학의
손실초래 사유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

- 4) 교외 연구 수주 및 진행 절차 체계화
 - 시작 전 사전 협약 및 연구비 계획 협의 후 연구 추진
- 5) 중앙 통제 시스템에 의한 교외연구비에 집행 필요
 - 물품 구매 시 산단 구매요청을 통한 지출 필요(기계, 집기, 프로그램 등)
- 6) 연구비의 80%이상 일부 세목에 배정할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 필요
(연구비관리 규정 - 제10조2항)
- 7) 연구비 카드 및 개인 카드 지출 후 이로 인한 혜택 개인 수혜 불가(예. 포인트 적립 등)
- 8) 법인카드 사용 원칙 준수